

위 축 장

- (1) 성 명 (한자)
(2) 주 민등록번호
(3) 주 소

귀하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도)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도지사
시 장
군 수) [인]

2103-195일
83.6.18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120g/m²)